

기사연리포트

통권 제14호

기사연 칼럼 (김영주) 3 ·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려고 하는 법인가? (홍성수) 6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 (박종운) 18

존엄한 삶을 위한 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송진순) 31 · 기사연 소식 43

기사연
리포트

[기사연 칼럼]
차별금지법,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택

김 영 주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봄의 생명력과 여름의 푸르름을 노래하며 기사연 리포트의 서문을 작성한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을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나눌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겠지만, 세상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어수선합니다. 새롭게 피어나 푸르게 자라난 그 무엇인가가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으니 이 가을이 넉넉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왔으며, 이제는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는 생활 방역을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는 우리의 지혜를 봅니다. 물론, “일상”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속에는 그것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겠지요. 그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기사연 리포트〉 14호에는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의 발의 이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아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요 쟁점 및 이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을 소개하며 한국 사회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는 특히나 “이웃을 내 몸 같이” 섬기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논의의 과정은 사라진 채, 나와 너를 구분하고,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과 힘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기독교가 추구해야하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와 이를 담아내야하는 교회의 공공성이 무너지고, 사회적 악영향의 근원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 위에 정확한 정보를 덧대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사연 리포트〉 14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위시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여야 하며, 더 나아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고려하여 가장 현실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숙명여대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는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글에서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를 소개합니다.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박종운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이라는 글을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바른 태도는 무엇인지를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의 송진순 교수는 “존엄한 삶을 위한 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를 소개하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어 한국 사회 내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회적 절차라는 것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시선과 언행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의 무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사연 리포트>에 실린 글들을 통해 이 무게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할지를 고민하는 기독교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그래서 하나로 모인 교회의 목소리가 건강한 시민 사회의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사연 리포트

차별금지법, 무엇을 하려고 하는 법인가? - 차별금지법의 쟁점과 과제

홍 성 수 /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차별금지법의 역사

차별금지법이 연일 화제다.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각계각층의 찬반 논란도 뜨겁다. 사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1998년 인권을 주요 국정이념으로 내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통과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권’이 주요한 국가적 이념과 과제로 자리 잡았다. 국가보안법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몇 가지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어느덧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의제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실제로 고문, 자의적 구금, 수용자 인권 등의 의지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차별’ 문제다. 차별은 사인 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기준과 판단, 그리고 구제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일례로 고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구제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문의 개념과 기준을 정하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문행위자를 엄벌에 처하면 된다. 정부 당국의 의지가 문제일 뿐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 차별은 일단 무엇이 차별인지 기준을 정하기가 조차 쉬운 일이 아니고, 사적 개인이 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어디까지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도 까다로운 일이다. 고문처럼 엄벌에 처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에 위해 차별의 개념과 구제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 주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별을 구제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이 인권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 중 마지막 퍼즐이나 다름없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섰지만 많은 암초에 부딪혀야 했다. 일부 개신교계의 반대도 있었지만, 경영계의 반발도 있었고, 법무부 관료들의 저항도 있었다. 2006년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내지만, 2007년 법무부가 이보다 한참 후퇴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결국 차별금지법 입법은 실패로 돌아간다. 다행히 그 이후에도 명맥이 끊긴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정동영 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약속했었고, 17, 18, 19대 국회에서 여섯 차례나 의원입법으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2013년경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사실상 후퇴 국면에 돌입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두 개의 법안이 보수개신교 등의 반발에 못 이겨 철회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인권이나 차별에 관련된 법안들은 줄줄이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핵심은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이나 차별금지가 들어간 법안들의 입법이 같은 이유에서 줄줄이 반대에 부딪힌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추진되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등대우법안이라는 이름의 차별금지법안이 성안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법무부에 차별금지법TF가 설치되고 동등대우법안이 성안되었다. 물론 이들 보수정부에서 진지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최소한 형식적으로나마 차별금지법 추진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법제라는 점을 방증한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예시법안이 제출되었다. 전례 없이 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나섰다. 2000년대 중반 이후 15년 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특히 개신교의 여러 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인 것에 주목할 만하다. 총 1,384개 개인/단체/교회가 연명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합니다”를 필두로 해서,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여러 개신교계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강연이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신교 내에서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강하다. 특히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이나 단체들이 차별금지법에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래에서는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내용을 다루면서 특히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¹⁾

일단 차별금지법과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 그리고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법안

1) 이 부분은 홍성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권 3호, 2018을 수정/보완한 것임.

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차별 관련법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폐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으로는 정보소외계층차별금지법안, 성차별·성희롱금지법안, 학력차별금지법안, 지역차별금지법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아동복지법, 방송법, 교육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에도 차별금지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차별 관련 법제들은 개별적인 사유와 개별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이다. 일각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첫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차별이 금지되는 특정한 사유(차별금지사유) 또는 특정 영역(차별금지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고,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마다 하나하나 법률을 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다. 차별금지사유가 대략 20개 정도 되고, 차별금지영역이 4개인데, 80개의 법률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차별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별의 피해자는 소수자와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복합적 사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약자의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성이자, 장애인이면서, 소수종교를 믿고 있고, 인종적 소수자인 경우라면 차별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유로 차별받았는지는 불분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차별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여성이어서인지, 장애인이어서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를 콕 집어서 특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구제를 받기도 어렵고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는 여러 차별금지사유를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차별시정 등 구제절차 역시 단일한 차별시정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의 대부분은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반대나 다툼이 없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렇다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은 어떠하냐고 묻고 싶다. 그것도 반대할 것이다. 예둘러 가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진다. 차라리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하는 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논점이 분명해진다.

3. 차별금지사유: 차별이 금지되는 이유들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따라서 차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차별금지법이 정의하는 차별은 다음과 같다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 나. 재화·용역·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

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이용
 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

여기서 ‘성별 등’으로 제시되어 있는 목록을 보통 ‘차별금지사유’ 또는 ‘금지되는 차별사유’라고 부른다. 차별이 될 수 있는 이유나 근거 또는 특성을 말한다. 즉, 성별 등을 이유로 해서 누군가를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인 것이다. 차별금지사유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근거로 차별금지사유가 정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일단 차별금지사유에는 타고 난 것이며 어떤 개인의 일부인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인종, 장애, 나이 등이 대표적이다. 타고난 것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명제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장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고 등에 의해서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 신분에는 가문, 혈통 등 타고난 신분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지위 등 나중에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갖게 된 것도 포함된다. 종교는 아예 출생 이후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즉 차별금지사유는 타고난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고, 타인이 바꾸라고 요구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한다.

일부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성적 지향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심지어 치료받을 수 있다는식의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냐는 논쟁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이면 종교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에게 “종교를 바꾸지 그려세요”라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이성애를 하시면 안 되나요?”라고 충고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지, 자유의지에 따라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인지, 타인이 그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지이다. 타인이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유의 정체성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이냐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다. 누군가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사유에는 주요 국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 장애, 나이, 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의 사유가 있고, 고용형태, 병력, 언어 등과 같이 국가별로 차별금지사유로 두기도 하고 두지 않기도 하는 사유도 있다. 유엔의 공식 문서²⁾에서도 성적 지향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다. 국제인권규범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에 차별금지원칙이 명시되어 있는데, 1966년 채택된 이 문서에는 차별금지사유를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로 규정하고 있다. “기타의 신분”이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둔 것인데, 2009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가 “일반논평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E/C.12/GC/20)에서 기타의 신분에 속하는 차별금지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장애, 나이, 국적, 혼인과 가족상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건강상태, 거주장소,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자유권위원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들 역시 공식 문서를 통해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을 특정한 결의문과 보고서가 연달아 채택된 바도 있다.³⁾ 국제사회에서 성적 지향이 보편적인 차별금지사유로 자리 잡았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한국은 이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이미 20년 가까이 운용해 왔고, 이를 근거로 수많은 법령들이 운용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차별금지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숫자가 적다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

2) "일반논평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E/C.12/GC/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3) HRC,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on Discriminatory Laws and Practices and Acts of Violence Against Individuals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U.N. Doc. A/HRC/19/41, (2011. 11. 17.);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dopted 26 September 2014) - A/HRC/RES/27/32

별이 사소한 것인 듯 치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은 차별 문제의 특성을 무시하는 얘기다. 직접 보고 들은 차별 사례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건 차별이 실제로 없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차별을 인지할 만 상황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사람한테 누가 동성애로 인한 차별을 호소하겠는가? 그런 사람한테 어떤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하여 친구로서 동료로서 교류하고자 하겠는가? 현실은 전혀 다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양성애자 응답자 중 14.1%가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진정 건수는 차별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일례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대폭 증가했다. 그렇다면 2008년 이전에는 장애인 차별이 없었고, 그 후에는 장애인 차별이 늘어난 것일 리는 없다. 그동안 차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당사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비로소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진정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은 성소수자들이 권리투쟁에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걸 보고 '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수자 차별의 현실을 무시한 너무나도 무지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4.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종교는 차별금지영역이 아니다.

위의 차별 개념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차별금지영역이다. 즉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은 1) 고용, 2) 재화·용역·시설, 3) 교육, 4) 행정서비스, 이렇게 네 영역에 한정된다. 즉, 이 영역 이외에서 벌어지는 차별도 차별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 바로 종교 영역이다. 따라서 종교 영역에서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여성 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지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아니다. 개신교의 어떤 교단에서 동성애자의 목사 안수를 금지했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 물론 필자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의 여성차별이나 개신교의 동성애 차별에 매우 비판적이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으로 금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의 제안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종교영역에서의 차별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은 의도적으로 종교영역을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명백한 오해이다.

다만 종교가 세속사회와 접속할 때는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교단에서 성직자를 뽑을 때 차별금지사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지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사람을 채용하거나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할 때는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것도 종교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 종교가 자신의 교리를 사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신교계에서 만든 대학에서는 개신교 신자만 교직원이 될 수 있고, 불교계에서 만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불교 신자만 수혜 대상이 되며, 가톨릭계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가톨릭 신자만 채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허용된다면 종교에 중립적인 세속 국가의 토대가 무너지게 된다. 종교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국가 공동체에서 종교와 무관하게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공존의 조건을 마련하는 법이다.

또한 종교가 사회에 접속하여 사람을 채용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순간 사회로부터의 수많은 혜택을 공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며 교육부가 인증한 학위를 준다. 심지어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받는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유익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고용이나 교육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종립학교나 종립사회복지시설들도 국가 공동체의 기본적인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게 싫다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면 된다. 실제로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다.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은 차별금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가 제공

하는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 공동체의 최소한의 규칙은 따라야 한다. 즉,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종교가 사회로 나온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그렇다고 종교가 사회와 절연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차별금지 영역에서도 종교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고, 부처님의 자비도 보편적인 자비의 이념으로 재해석하여 그것을 고용이나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종교의 정신으로 설립된 회사에서 채용지원자들에게 ‘신앙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훈인 (세속화된 의미의) ‘서로 사랑하자’에 동의하는지 묻는다면 문제될게 전혀 없다. 대표적인 미션스쿨인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따라 사회에 이바지할 지도자를 기르는 배움터”임을 표방하고 있다. 종립 학교에서 교직원이나 학생을 뽑을 때, 이러한 건학 이념에 동의할 것은 묻는 것은 문제될게 없다. 채플 수업도 특정 종교 제례가 아니라, 세속화된 건학이념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차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다른 식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만약 어떤 종교가 국가를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여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법의 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종교가 학교를 세우고, 사회복지재단을 만들고 회사를 설립할 때에 그러한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불허한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교가 분리된 국가의 당연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 종교가 사회에 나가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하겠다는 것도 당연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5. 차별을 구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검토해볼 문제는 차별금지법의 구제 방법이다.흔히 차별금지법이 엄청난 강제수단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 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차별인지 아닌지가 무 자르듯이 딱 나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맥락도 고려

되어야 한다. 명백하고 비난가능성 높은 차별도 차별이지만, 해악이 크지 않은 낮은 수위의 차별도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법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차별금지사유나 차별금지영역을 줄임으로써 차별의 범위를 아주 좁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들을 규율하려는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어떤 사유와 영역을 제외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렇다면 차별의 범위를 그대로 두고 구제방법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차별의 개념을 넓게 잡은 만큼 제재수단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차별금지법은 대체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의 한 사건을 생각해보자. 한 정치인이 “정치권에는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것은 ‘차별’일까? 일종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 최소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하고, 세 번의 재판을 통해 판결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차별행위 중단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구제방법도 차별이 아닌 행위 중단과 대책 마련이고 그나마도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제정되면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정기관이 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차별금지법상 차별시정은 ‘시정권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행위를 한 사람에게 차별의 중지나 구제 또는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는 방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즉, 차별금지법의 구제 조치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강제로 단번에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시정권고의 효력을 보충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적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식인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결국 법원이

차별이라고 판단해야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인권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미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기간제법 등에 시정명령제도가 있지만, 오히려 시정명령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의 평등법 예시법안에는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시정명령제도의 남용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시정명령제를 제외하면 되는 것이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차별금지법에는 소송지원, 법원의 임시-적극 조치 명령, 징벌적 손해배상, 증명책임 전환 등 차별 관련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규정한다. 시정권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호소할 수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단되는 차별은 해악이 명백한 일부 차별행위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 구제를 위해 법원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법원의 차별시정 조치가 남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 나아가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의 여러 쟁점들을 살펴봤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의 남용을 우려하지만 실제로 차별금지법은 제한된 일부 영역에서의 차별만을 관할하며 그나마도 강제보다는 설득과 협력에 의존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법제로 자리 잡은 내용일 뿐이다. 종교의 자유와의 충돌을 우려하지만 실은 정교가 분리된 국가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종교를 믿건, 어느 지역 출신이건, 장애가 있건 없건, 성적 지향이 무엇이든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권과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기사연 리포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提言)

박 종 운 / 변호사, (전)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정위원장

1. 차이와 차별, 그리고 금지되는 차별

1) 차이 vs. 차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자본가와 노동자, 내국인과 외국인, 각종 인종,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 이들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란 각자 개성, 특성, 독특함이라는 이름의 ‘다름’ 혹은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들 간에 ‘차이’, ‘다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때로는 존중받고 때로는 고려되어야 하며 때로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무수한 ‘차이’들 중 어떤 특정한 차이들은 수직적인 위계를 가지고 구별되면서 ‘차별’로 전환된다. 그리하여 비정상적/소수라고 여겨지는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수직적으로 ‘서열화’되어 열등한 존재 심지어는 부인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직적인 서열’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예컨대, 장애인의 경우, 인적 구성과 권력관계로 보면 우리 사회는 다수의 비장애인 남성에 의해 지배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부분적으로나마 육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는 자신들이 소외시킨 장애인을 열등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는다. 이러한 낙인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가중되고, 그 편견/고정관념은 다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차별의 악순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차별’이란 ‘무수한 차이/다름들’이 어떤 형태로든 힘/권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좋고 나쁨, 선과 악, 우등과 열등 등으로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 그리고 인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좋고 나쁨, 선과 악, 우등과 열등으로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되어서는 아니 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차이/다름’들이, 인위적으로 ‘구별’당하고 ‘차별’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2) 차별 vs. 금지되는 차별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란 단어를 위법/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에서 ‘차별화 전략’이라고 말할 때, 그 ‘차별’은 가치중립적일 수 있고 합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금지되는 차별이 아니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은 흔히 자녀들로부터 “(00와 나를) 차별

1) 이와 같은 입장은 조순경,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인권학술회의 2002자료집 :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서울 : 한국인권재단, 2002)에서 영향 받은 바 크다.

하지 말아 달라”는 투정 섞인 말을 듣기도 한다. 이 경우에 연령, 성별에 따른 차별이 문제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법률에서 ‘가정’이라는 영역을 차별금지영역으로 규율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차별’이라는 단어는 위법/부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일반 사회인으로 하여금, 차별금지법상의 ‘차별’이라는 용어에 대한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다루는 차별’은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²⁾를 위반하는 행위 중에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률상 금지되는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직접차별의 개념). 또한 인권의 관점에서 말하는 ‘금지되는 차별’의 속성은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 정체성, 본질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대개 그것으로부터 발현되는 개성, 특성, 조건, 행동양식은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거나, 선택 혹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차별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모욕/모멸감, 인격 모독, 혐오, 증오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평등한 지위나 자격을 훼손하고 박탈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실질적 기회마저 빼앗는다. 혐오(hate)가 특정 소수자 개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 또는 차별하고 배제하려는 태도라면, 차별(discrimination)은 편견과 혐오가 자라나서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혐오가 혐오를 재생산하듯이, 차별은 차별을 낳게 되어, 혐오와 차별은 더욱 더 확산, 재확산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주로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된다. 그만큼 사회적인 갈등과 분쟁은 만연해지고,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2020. 6. 30.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³⁾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2)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직접차별, ② 간접차별, ③ 괴롭힘, ④ 성희롱, ⑤ 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면서, 적용되는 차별금지영역은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에 한정하고 있다.

3) 소결

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접하는 성경인 ‘창세기’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26). 지금 우리 헌법이 평등권을 규정한 것은, 연원(淵源)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여기에 맞닿아 있다. 서구의 법사상에서 헤브라이즘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분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 양반과 상놈이 존재하던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을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하나님 앞에) 평등’ 사상 때문이다. 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 깨어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었다. 이 진리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1) 개별적 차별금지법 vs.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 혹은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차별금지 대상’ 혹은 ‘차별금지 사유’가 특정한 1개에 한정되어 있으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고, 여러 개면 ‘포괄

3) 실제로 입법될 가능성이 높은 여당 발의안은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시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 시안을 언급하고자 한다.

적 차별금지법’이라 말할 수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대상이나 사유가 특정한 1개에 머물다보니, 그 대상이나 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꼼꼼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되는 영역을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상이나 사유가 많다보니, 그 대상이나 사유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한정하여 비교적 제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게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에 들어가서 ‘현행법령’을 대상으로 ‘차별’로 찾아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평등’으로 찾아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검색된다. 이외에도 개별 법령에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는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⁴⁾.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상 최상위에 있는 헌법이 직접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차별금지사유로, ‘모든 국민’에 대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민감도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

4)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에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 정도가 우리사회 차별 정도가 심각하다(매우+다소)고 답했고, 2020년 차별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우리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보았으며, 현재와 같이 대응한다면 차별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사회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응답(72.4%)이 자연적으로 완화·해소될 것이라는(32.1%) 전망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 2020년 차별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나와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면, 다양한 대상/사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률,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되어 갈수록 사회적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서라도, 평등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차원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곧바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건설과도 직결된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해 해당 대상, 사유, 영역에서 차별을 매우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일부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다루기 위해 각각의 사유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되고, 그 동안에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국민, 차별을 당하면서 반인권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나아가 개별법들을 모두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은 구제수단의 종류나 수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차별 사유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차별시정 및 피해구제를 호소해야 하는지, 복잡하게 얹히게 된다. 기대해 볼만한 구제조치 또한 편차가 발생한다. 결국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와 같은 특정 사유에 따른 차별을 심도 있게 다루거나 그분들이 겪는 특정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를 시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사람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고 일상에서 이러한 사유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복합/중복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종합적으로 해석, 적용, 해결하기 위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여러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차별 요소 간의 수직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제사회의 경향을 보더라도, 대개 선진국으로 발전되어 갈수록, 처음 몇 개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및 시행에 뒤이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 및 시행으로 나아가고 있다. 차별금지 사유의 경우, 2000년대까지만 해도 6~7개 정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헌법에만 10개 이상 나열하는 국가들도 있고, 차별금지법에는 20개 내외를 규정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평등법으로는, 영국의 평등법,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 등이 있다. 소극적인 ‘차별금지’로부터 적극적인 ‘평등권 실현’으로 나아가는 경향, 국민의 권리에서 인류 보편의 권리로 나아가는 경향, 개별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정하면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은, 아마도 개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별다른 역할을 하시지 않거나 못한 분들이 아닐까, 차별과 관련된 인권 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왜냐하면, 만일 그러한 활동을 경험해 보았다면, 차별금지 및 평등권 실현은 몇 개의 개별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그 성격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격상 차별금지영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법률(안)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쟁론하면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중 일부 사유가 포함되는 것이 싫다고 해서, 그 특정사유(예컨대 성적지향)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할 것도 아니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3) 소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명시한 평등 이념 실현의 법률적인 근거이자,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우리사회에 제기하면서 시정권고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식변화를 추구하는 한편,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이다. 법률로 규정하는 만

큼, 차별의 개념과 유형, 차별 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차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용하지만 은근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의 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3.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면 반대만이 정답인가?

1) 필자의 경험과 개신교의 대응

필자는 2002년경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시작하였다. 2003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법제정위원회를 맡아 제정 법률안 작성에 참여했고, 5년여 동안 법제정 운동을 통해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국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경이다. 필자도 그 당시 가칭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 이후 약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등이 수차례 여러 건의 입법 권고, 입법 발의 등을 하였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2020년 제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난 6월 29일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대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걸림돌 혹은 장애물 중에 하나는 바로 개신교 보수진영의 강력한 법제정 반대 운동이었다. 2020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아니, 이번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법률가들도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친숙한 분도 있고 존경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왜 개신교 보수진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전면적

으로 반대하는 것일까? 반대운동만이 정답이고 유일한 대안일까? 반면에 에큐메니칼과 사회선교 진영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의 목소리가 높다. 참고로, 필자는 개신교인이고, 모태신앙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은 동성애를 ‘죄’로 기록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그 자체에 찬성하면서도, 수정 보완을 요구하는 대안입법 운동을 하고 있다. 굳이 규정하자면, ‘무조건 찬성론자’도 ‘무조건 반대론자’도 아닌, ‘대안입법론자’인 셈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대안입법론

필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속한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고, 지혜를 모아가야 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장 중에는, 가짜뉴스 프레임에 걸릴 만한 내용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절반의 진실 혹은 의도된 왜곡과 과장된 걱정도 존재 하지만, 일부는 설득력이 있고 경청해야 할 내용도 있다. 필자는 바로 그 부분을 법 제정 과정에서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정 차별금지 사유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규정되면 신앙/종교의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걱정할 만큼 문제 가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신앙/종교의 자유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이니만큼 함부로 금지하거나 억압할 수도 없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종교적 예외사유’ 등을 아예 법에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차별금지 및 평등권이 갈등 혹은 충돌할 경우에는 서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 및 적용될 수 있도록 원칙과 예외를 구체적으로 정밀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점이 대안입법론의 핵심이다.

필자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진 세상, 그로 인해 필자를 포함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된 세상,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는 길 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분들은 왜? 유독! <동성애>만 (가장 큰? 핵심? 유일한?) 죄악인 것처럼 선전 선동할까, 하는 점이

다.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중요도나 인용 및 발언 횟수를 보더라도 <동성애>는 <이성애자들의 음란함>보다 더 나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세계 개신교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참으로 다양하지만, 동성애자를 성도로 인정하고 심지어 목회자 안수까지 허용하는 교회가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을 돌아보면, 혹시 동성애 반대(=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동성애 및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배제, 증오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필자는 이성애자 개신교인으로서,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고백하지만, (함부로 경중을 다투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이성애자의 성적 타락보다 몇 백배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사회적 부조리(不條理)와 부정의(不正義)와 타락(墮落)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죄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사회적 불의와 타락 중에 동성애만 ‘유독 엄청난 죄’도 아니거니와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3)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 인권보장의 필요성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듯이, 예컨대, 동성애의 경우, 동성애를 성경에서 ‘죄(罪)’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 즉, 그 사람의 인격은 존중되고 그 사람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 자체는 사회법상으로 범죄가 아니다. 심지어 사회법상 범죄자(犯罪者)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권(人權)은 보장해 준다. 교회와 신앙법상 죄인(罪人)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죄인(罪人)에 대해서는 인권(人權)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보장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공의와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유뿐만 아니라, 장애, 연령, 종교, 인종, 학력 등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고 있다⁵⁾.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해서, 동성애가 신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5) 국가인권위원회 시안에는 21개의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아니다. 차별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주류적 경향(남성과 여성, 이성애)과는 다른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이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들도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이다.

성(性)이란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다. 성별 구분의 기준을 ‘신체적인 생식기’로 보면, 남성, 여성, 양성, 무성이 존재하고, ‘염색체’로 보면, XX, XY, 그리고 변형된 경우가 존재하고, 사회심리학적(Gender)로 보면 보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육체적인 징표와 사회심리학적 성(性)이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보기 어려운 간성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성적 지향은 주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말한다. 아무리 교육을 통해 신앙으로 상담으로 변화시키려 해도 태생적으로 동성애적 지향을 갖고 일평생 유지하는 경우(좁은 의미의 동성애)가 있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런 지향을 지녔다가 변화된 경우(넓은 의미의 동성애)도 일부 존재한다. 따라서 탈동성애가 100% 가능하다거나, 100% 선천적이라는 주장은 둘 다 정확하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3의 성(간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시민들이 사회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그 존재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모든 시민은 각자 타고난 형상과 모습을 존중받으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불구자(不具者)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로 불리며 차별을 받았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년이 지난 지금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듯이,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해도, 법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모두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커밍아웃 바람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초기 현상일 뿐이고, 현실은 이성애자가 절대 다수이다. 그래서 동성애자를 ‘성 소수자’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동성애자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주장해야한다. 사랑하면서 전도하면서 혐오하고 정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면, 그 어떤 성소수자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변화되겠는

가?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르침, 종교개혁 이후 개혁된 교회를 따라야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칭찬하실까? 공의와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해야지, 압박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아니 된다.

미국 보수 개신교인들의 이혼 반대, 낙태 반대, 동성애 (차별금지) 반대 운동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러한 운동들이 일정 기간 동안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의 열광적인 지지도 받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결국은 실패의 길로 들어섰다. 오히려, 쌍방 간에 혐오와 증오를 확산시켰으며, 동성애 및 차별금지 반대운동에 대한 반작용(反作用) 등에 의해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가 예전보다 위축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개신교는 일반 시민사회와 격리되고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예배 참석 성도들의 숫자를 떨어뜨리면서 그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크게 저하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 문제는 세대 간의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세대 간에 인식 및 입장의 차이가 크다. 젊은 세대는 동성애를 개인의 문제, 자유의 영역으로 본다. 노년 세대는 동성애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 혹은 범죄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는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개신교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코로나-19 비대면예배 논란에 못지않은, 한국교회에 위기 상황이 오고 있다.

4) 소결 –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필자는, 지금 기독교인, 아니 보수 개신교인들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① 지금 현재와 같이 동성애 반대 =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②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에서 규범 조화적으로 세밀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특히, 종교기관/단체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를 인정받는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고 대안이 없다면, 결국은 ‘passing’을 당하게 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필자는, 개신교가 혐오와 증오를 양산시키는 종교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면 서도, 그분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게 되기를 소망한다.

신실하신 성도님들께 당부 드린다. 가짜 뉴스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남의 말만 듣지/믿지 말고 꼼꼼하게 직접 살펴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자!! 그리스도인답게,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황금률⁶⁾을 실천하자!!!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으로 힘들어야 하는 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나는, ‘동성애’가 사회법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믿는단다. 그러니, 네가 동성애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란다. 설사, 어떠한 이유로 네가 동성애자가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란다. 네 안에 동성애적 지향이 있다면 신앙으로 이겨내고, 동성애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곁에 있을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이거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동성애보다도 더 흉악한 죄를 범한, 더 엄청난 죄악들을 방치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단다. 네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아이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어왔다.”(마가복음 10:45)

6)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태복음 7:12)

기사연 리포트

존엄한 삶을 위한 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송 진 순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인간 삶을 구성하는 조건들은 복잡다단하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와 사회 구성원으로 부여되는 당위적 사고는 수없는 씨줄과 날줄로 엮어진 구성적 세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명제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지닌 존엄한 인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서로 공존하기보다는 늘 긴장과 갈등 가운데 해석되어왔다. 지고의 존재인 인간은 공동체의 선과 질서를 명목으로 정교하게 짜인 사회 정치적 권력관계 속에서 억압받아왔고,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이자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과 연하, 그리고 하층 계급이 그러했고, 민족과 지역의 경계에서는 난민, 이주노동자, 유색인종이 그러했다. 계급, 인종, 성별, 장애여부, 출신국가, 성적취향과 고용형태 등 내면화된 정치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에서 억압의 구조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인간 존엄과 해방을 위해 수많은 이들이 갈등과 협력 속에서 지난한 고투를 이어왔음도 간과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존엄한 이들의 삶을 위한 또 하나의 시도로 우리 앞에 당도해 있다. 그것은 수많은 씨줄과 날줄이 상호 교차하는 권력구조 속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대인 것이다. 문제는 이미 공고히 구축된 서로 다른 신념과 경계를 넘어 어떻게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공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13년간 차별금지법의 발의 과정은 말 그대로 좌초의 역사였다. 그간 차별금지법 논의는 동성애 찬반 갈등으로 왜곡/축소되어 왔고,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극단적인 견해차를 좁히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별금지를 말해야 하고 평등한 삶을 위해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한다. 차별금지법을 언급할 때는 최소한 두 가지 관점, 즉 그것은 입법절차에 따른 법안이라는 관점과 법률 제정 이전에 평등의 실현이 삶의 전 영역에 걸친 사회 구조와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지금의 대처 구도를 조망하고 유의미한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발의 과정과 법안이 담아내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을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1. 차별금지법안 발의, 그 좌절의 역사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13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되고 7년 만의 재발의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 공약은 2003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책정되었고,¹⁾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차별관련 전문가들과 인권단체와 함께 차별금지법 초안을 작성했다. 수차례 진행된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국민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통해 수정, 보완된 초안은 2006년 7월에서야 차별금지법 권리법안으로 확정되었다. 이듬해 10월 법무부는 20개의 차별금지대상을 선정했고 이에 따라 고용, 교육기관, 법 집행 등에서 차별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구제조치나 손해배상

1)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이었다. 구체적으로 1.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 2.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3.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이 과제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가칭)차별시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했다. <http://www.pa.go.kr>. 2020.9.27.

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이었다.²⁾

그러나 일부 보수 기독교 세력과 재계는 동성애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12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7개의 차별금지대상(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병력(病歷),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이 삭제됐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대신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밝히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와 인권운동가들은 법안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했으나³⁾ 현실 장벽을 넘기는 어려웠다. 차별금지법안 작성을 위한 5년여 간의 준비가 단 2개월의 난항에 부딪히면서 난파된 채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이 결성되었고, 여기서 논의된 안을 담아 2008년 1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차별금지 대상을 22개 대상으로 확대 보완하면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⁴⁾ 정부와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고, 결국 17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되었다.

이 같은 상황은 18대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2011년 박은수, 권영길 의원 등 진보정당 의원들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2013년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제안 설명도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최원식 의원과 김한길 의원은 각각 11명의 의원과 50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발의 직후 보수 기독교 단체의 법안 철회요구에 못 이겨 자진해서 발의를 철회해야 했다. 시사저널 인터뷰에 따르면 최원식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보수 기독교단

2) “차별에 굴복한 14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로 멈춰야 할 시간”, <웹진 인권> 2020.8. <https://www.humanrights.go.kr/site/main/webzine>, 2020.9.30.

3) “차별금지 항목 대폭 줄인 차별금지법 논란”, <일다> 2007.11.1.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4109, 2020.9.30.

4) http://www.comngood.co.kr/article_view.htm?selected_no=1220, 2020.10.1.

체들이 교회에 다니는 당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법안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항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기독교 단체들을 술하게 만나 대화도 했으나 설득이 불가능”했고, 결국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시기에 같은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과 얘기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전 했다.⁵⁾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을 채우지 못해 차별금지법 안을 발의조차 못 했다. 2007년 발의 이후 법 제정은 유예되었고,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⁶⁾

물론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진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2003년 인권위가 진행한 차별금지법제정추진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남녀평등고용법, 남녀차별금지법 폐지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인권위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안 제정과 함께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충위의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고 금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에서 인권의식 향상과 법안들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7차례에 걸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폐지 혹은 철회됨에 따라 인권 관련 법안과 조례 정책은 크게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사이 유엔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홉 차례나 권고했지만, 각 지역의 인권 조례와 인권 헌장, 즉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성평등/양성평등 기본조례에서부터 아동복지법에 이르기까지 각 조례들은 개악되거나 폐지되었다.⁷⁾

-
- 5) “국회 문턱 못 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시사저널> 2018.11.13.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577>, 2020.9.30.
- 6)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만 13년째”, <한겨레21>, 1332호.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49289.html, 2020.9.28.
-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https://nancen.org/2072>, 2020.9.29.

국회	발의자	발의 일자	의결 결과
17대	정부 (13개 항목의 차별금지법 발의)	2007.12.12	임기만료 폐기
	노회찬의원 등 10인	2008.1.28	임기만료 폐기
18대	박은수의원 등 11명	2011.9.15	임기만료 폐기
	권영길의원 등 10인	2011.12.2	임기만료 폐기
19대	김재연의원 등 10인	2012.11.6	임기만료 폐기
	김한길의원 등 51인	2013.2.12	철회
	최원식의원 등 12인	2013.2.20	철회
21대	장혜원의원 등 10인	2020.6.29	법사위 상정 중(10.2현재)

[대한민국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연혁]

21대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지난 6월 장혜영 의원은 법안 발의 요건인 정족수 10인을 채우고자 300명의 의원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응답한 의원은 같은 당의 6명을 제외하고 단 4명뿐이었다. 게다가 동참한 10명의 의원은 심상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그간 많은 정치인들이 보수 기독교계의 압력에 못 이겨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⁸⁾ 이번에도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거센 항의 메시지에 시달렸고, 지난 7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들은 대놓고 차별금지법안이 동성애자 보호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발의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⁹⁾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성적취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반대 담론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옹호법으로, 인간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동성애 독재로, 기독교 탄압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악법으로 변질시켰다. 보수 기독교 단체와 재계의 반대가 진영싸움으로 번지면서 인간의 가치와 평등의 실현은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국회의원들

8) "노무현 대통령의 뜻' 차별금지법", <경향신문> 2020.6.30.

<http://h2.khan.co.kr/view.html?id=202006291819001>, 2020.9.30.

9)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다." <미디어오늘> 2020.7.2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0>, 2020.9.28.

은 비존재로 살아가는 이들, 그래서 사회에서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된 이들을 위한 법률 제정에는 너무나 안일하고 무력한 태도로 일관했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에서조차 법안 발의 과정부터 난항을 겪었다는 점은 인권과 민주의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이권이 우선시되고, 언제든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상정된 법안을 토론조차 부치지 못했던 일이나 기성 정치인들이 기피하는 의제를 초선의원들이 나서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역시 우리의 현실이다.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오로지 국회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일, 국회의원들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수동적 거부나 방관의 태도가 아니라 비존재가 된 이들에게 존재됨과 인간의 권리를 되찾게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끝까지 고민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하려는 태도, 그것이 정치인이 해야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할 때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차별과 혐오의 일상화

법제적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살피는 것 이상으로 차별이 작동하는 사회 구조와 인식을 살피는 것이 요청된다.흔히 차별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겪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차별은 내가 아닌 그들의 문제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 말이다.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인 혐오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차별이다. 혐오는 여성,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등의 사회 내 약자와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일련의 사유와 행위를 포함한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에 따르면, 혐오는 오염물이 체내화 될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에서 작동된다고 한다. 그것은 신체의 안전과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관습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정동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원시적 두려움으로 정신적 차원에서 인간의 동물적인 측면을 오염된 상태로 간주한다. 따라서 혐오는 우리 몸의 안과 밖, 즉 경계와 관련된 인지적 내용을 포함하게 되고, 이것이 확대될 때 우리와 다른 특정 집단을 배척하고 낙인찍는 논리로 이용되어왔다.¹⁰⁾ 그 결과 혐오는 나와 다른 존재를 객체화하고 타자화 하게 되는데, 이는 감정의 차원만이 아니라 상대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불평등한 위계 구조와 사회

10) 마사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서울: 믿음사, 2015), 166.

정치적 상황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차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혐오와 차별은 구별되지만 작동하는 방식은 비슷하다. 즉 너와 나는 같은 존재가 아니며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상대를 분리하고 배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유와 행위를 일컫는다.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전원)는 행위의 차원에서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차별은 기본적으로 특정인(또는 특정 집단)을 다른 사람(또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특정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 결국 차별은 평등과 배치되는 개념이고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상대적 평등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인데도 차등적 대우를하거나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상인데도 동등한 대우를 하면 차별에 해당한다.¹¹⁾

그는 차별을 평등과 배치된 개념으로 보고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을 구분한다. 차별 행위에 대해 인권위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루고 있으나 차별의 중층적이고 복합적 양상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평등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다른 한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은 현존하는 차별을 반영하는 현상이면서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드는 일종의 차별 행위로 규정한다.¹²⁾ 주목할 점은 혐오가 일상이 된 시대, 특정 집단만이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혐오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타인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를 반영하는 표현들—한남충(수구적인 한국 남성), 된장녀(브랜드 카페를 이용하는 여성), 맘충(아기를 양육하는 여성), 뜰딱충(노인세대), 똥꼬충(성소수자), 지잡대(지방대학) 애자(장애인), 외노(외국인노동자), 똥남아(동남아시아인), 좌빨/

11) 이준일,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방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미와 쟁점>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76, 82.

12) 홍성수 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6, 8-14.

수구꼴통(서로 다른 정치이념의 지지자), 개독(소통이 어려운 기독교인) 등-은 성별, 인종, 출신지역과 같은 ‘선천적 요인’이나 학력, 정치이념, 혼인(육아)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혐오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누구도 혐오나 차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혐오가 일상이 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마저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이 의도적일 뿐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역으로 차별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차별이 일어나는 것은 취업, 고용, 교육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만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비가시적이고 비의도적인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 사회에 편만한 인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지속적인 차별이 인간을 더욱 비존재로 만들어 간다. 오랜 시간에 걸쳐 규정되고 고착된 정상성, 혹은 편향된 인식들이 상대를 재단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위계적 권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쓴 김지혜 교수는 차별의 구도에서 권력을 가진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위가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얹히고 입장이 뒤바뀌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이면서 이주민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보수 성향의 정치 이념을 가진 노인의 경우, 중첩된 차별 피해를 받게 된다. 물론 언제든 차별받는 사람은 다른 상황에서는 차별을 가하는 주체로 역전되기도 한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은 자신의 다면적 정체성과 연결되는 다면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차별을 하나의 쟁점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 대 집단의 구도로 바라보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차별이 한정된 차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되는 집단 간 이해관계로 해석될 때 차별의 본질적인 성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는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으로서 개인의 어떤 부분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든 상관없이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람을 구분하여 다르게 보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¹³⁾ 다시 말해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 존엄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3) 김지혜, “모두를 위한 평등: 구조적 차별과 공동체의 책임,” 2017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97-98.

이 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될 이유는 명백하다. 헌법에 근거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사회가 빚어낸 정상성의 신화 그리고 이를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과 인정 투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를 우선으로 삼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너로 인해 나의 일자리가 박탈당한다는 생각, 다른 학력과 다른 출신 지역을 가진 네가 나와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불쾌감, 인종과 종교가 다른 너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 경제적으로 열악한 너는 게으르고 비굴하다는 오해, 신체적으로 불편한 너는 지적 사고나 의지가 약하다는 오만함, 성적지향이 다른 너는 생활이 방만할 거라는 그릇된 재단, 나이 많은 너는 잉여적 존재라는 비하감이 이 사회에서 타인을 어떻게 지우고 예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폭력인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이 존재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법 제정이 된다면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헌법은 자신을 구체화하는 법률을 매개로 그 기본 가치를 실현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신의 자유는 이를 구체화하는 형사소송법을 필요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추구하는 평등원칙을 구체화하여 현실에 집행하는 법”이다. 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적 규율이 가장 절실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결코 잉여의 법이나 옥상옥의 법이 아니다. 이것은 헌법과 개별법의 매개로서 차별이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 삶을 침탈하는 편견을 정면으로 다뤄 치유하는 기본법”이라고 주장한다.¹⁴⁾ 만약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삭제한다면, 그것으로 가해지는 차별을 묵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차별금지법이 다루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 차별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과 금지를 내버리는 것이다.

14) “헌법만으론 ‘평등 공동체’ 구현 못한다”, <한겨레21> 1324호, 2020.7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044.html, 2020.0927.

3. 경계와 차별을 넘어선 곳에서

기독교의 처음 자리, 이천 년 전 예수는 무엇을 선포했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절박한 선포는 유대의 식민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1세기 로마제국이 지중해 전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사제 계층은 타락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야훼 하나님과 유대민족의 계약관계는 유대인들에게 사랑과 공의에 기반한 거룩과 정결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 형식주의와 관행만이 남은 예속된 삶을 강요했다. 로마제국, 유대 당국 그리고 성전에서 필요한 재정과 노역은 전적으로 유대 백성의 몫이었고, 지속되는 전쟁 상황은 피지배 계층에 대한 폭력, 약탈 그리고 착취로 나타났다.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팍스 로마나는 폭력과 무질서의 얼굴을 한 야만의 시대였다.

이스라엘 역사 한가운데서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미래의 급작스럽게 찾아올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곳, 아비규환의 민중의 삶에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는 유대인을 거미줄처럼 옮아매는 수백 개의 율법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간명한 진리를 전했다. 자기 딸을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보고자 예수를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인을 주인 상을 탐하는 개라고 꾸짖으면서도 예수 하나님 보고 달려온 여인의 청을 두말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막 7:25-30). 열두 해 혈루증으로 고통 받는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잡아 치유된 것을 보고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 선포했고(5:25-34),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그녀를 복음의 메신저로 삼았다(요 4:7-42).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적으로는 이방인 혹은 낙인찍힌 자였으며, 종교적으로는 죄인이었고, 육체적, 심리적으로는 고통 받는 자들로서 경계 밖으로 밀려나 사회에 편입되지 못 했다는 점이다. 사회, 정치, 역사 그리고 종교라는 종총으로 교차되는 구조 속에서 내부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존재가 된 자들, 그래서 항상 차별이 당연시 된 자들이었다. 예수는 이들에게 율법의 기준이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운운하며 조건부 구원을 선언하지 않았다. 혈과 육을 넘어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명했고, 이를 고백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선포했다. 예수는 가르침을 통해 세상의 합리성과 효용의 가치를 뒤엎고, 치유기적과 축귀를 통해 제국의 폭압적 정치와 종교의 엄혹한 관행을 드러냈고, 인간을 비존재로 만드는 상황에 분개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임한다는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것은 예수가 경계 밖에 있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수많은 씨줄과 날줄이 교차하는 사회 속에서 일상이 된 차별은 교육으로 혹은 법률로 극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인간 존엄과 가치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 사회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이고, 논쟁과 대화 속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삶으로 이행될 수 있는가라는 실천과 삶의 문제이다. 예수가 목숨을 내어 줄만큼 과감하게 그를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로 이끈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만큼이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폭력 앞에 스러지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율법적 판단과 세속적 가치가 우선이 되지 않고 그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귀한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명목상의 지고의 가치는 예수가 경계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한발 가까이 나아갈 때, 그에게 신성모독과 혹세무민이라는 죄를 덧씌웠고 종국에서 세상 밖으로 그를 밀어내 버렸다. 정상성이 아니라 경계와 차별이 넘어선 곳에 구원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복잡할수록 생각은 단순해야 한다. 상대를 차별하고, 인간 존재를 무화시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과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차별금지법은 인권, 법제화, 사회적 합의 등 모든 거대 담론이 지나는 곳에서 힘겨운 발걸음을 떼는 중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리고 평등하고 자유롭다. 헌법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이 말하기 전에 우리는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러니 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는가? 수 없이 정교하게 엮어진 정상성의 신화라는 거미줄을 걷어내고 내 옆에 있는 인간을 마주하며 친구로 이웃으로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요청하겠는가? 인간다운 삶은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

에 상대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간다워 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존엄하듯, 너도 존엄하다. 내가 너와 다르듯이 너도 나와 다르다. 차별금지
법은 존엄한 삶을 위한 도약대인 것이다.

기사연 리포트

기사연 소식

- 저희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방침에 동참하여 재택근무 및 탄력적 근무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정되어 있었던 외부행사들을 잠정 중단하고 하루 속히 정국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및 미디어를 통하여 대안적인 형태의 연구 및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14일 오후 2시부터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당일 행사의 모든 내용과 자료는 기사연 홈페이지 내의 인식조사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jpic.org/20201014survey/>



- 서울시 문화정책과 종교단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기사연의 “나의 도시 이야기: 소설과 소생 사이” 사진 공모전이 10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일정 및 참여는 기사연 홈페이지 내의 나의 도시이야기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http://jpic.org/citystory/>

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유튜브 방송 “신박한 기독교 수다쇼 [어쩌다 쌀-롱]”은 지속적으로 제작, 방영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어쩌다 쌀-롱”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 구독, 댓글을 통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channel/UC1v7sU29EqqUeSZH4QZAtMA>
5. CI 빌딩 지하 1층 이제홀이 “공간이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단체 및 지역 사회의 모임을 위한 공간, 다양한 목소리가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6. 코로나 19 사태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사연 리포트를 구독하시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사연의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에 대한 기독교 관점에서의 적확한 분석과 전문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기사연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사연 연구사업 후원계좌: 신한 100-025-15382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리포트> 통권 14호

발 행 일: 2020년 10월 21일

발 행 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전 화: 02) 312-3317

홈페이지: www.jpic.org

이 메 일: cisjd@jpic.org